## 2025년도 어망(자망) 조립 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5년도 어망 (자망) 조립 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 자망조립업체, 어선어업인(어업법인 포함)

※ 자망조립업체는 공고일 기준 「수산업법」에 따른 생산·판매업 신고를 필한자에 한함

####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 · 문의처
1	어망(자망) 조립 장비 지원사업	100,000천원 (보조 60,000, 자담 40,000)	2025. 1월~12월	수산정책과 (710-3217)

○ 사업내용 : 자망 어구 조립용 재봉기

○ 지원조건

- 지원단가 : 척당 보조금 지원한도 8,000천원 이내, 최대 3대까지 지원(사업 신

청현황에 따라 최대지원 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 원 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초과 사업비는 사업자 부담)

####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5. 1. 9.(목) ~ 예산 소진 시까지(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접수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본관 2층)

라.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지원신청서(서식 2), 사업계획서(서식 3), 견적서 (세부내역 포함) 각 1부
-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증 1부
- 선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 어망 조립·판매실적 증빙서(어망조립업체)
  - \* 작업인력현황, 어구생산판매장부
- 조업 및 판매실적 확인 증빙서(어선어업인)
  - \*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지구별 수협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수협 위 판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중 택 1
-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마. 문 의 처 : 수산정책과 🕿 064)710-3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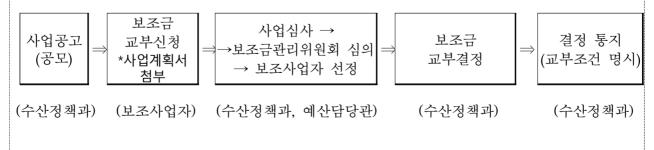
#### 4.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및 지원 제외대상

가. 우선순위

- 1) 「수산업법」에 따라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하고 자망 어구를 조립 운영하는 자 ※ 경합이 있을 경우 ① 작업인력 수, ② 조립·판매 실적이 많은 자로 한다.
- 2) 「수산업법」에 따라 자망어업 허가를 받고 자망 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자(소형어선 선순위) ※ 경합이 있을 경우 ① 수산업경영인 ② 귀어·귀촌 지원 실적(최근3년간)이 있는 자로 한다.
- 나. 지원 제외대상
- 1)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은 자
- 2)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단, 어선법에 의한 계선계 제출어선 제외)
- 3)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
- 4) 당해연도 사업자 선정 시까지 지방세 미납부자
- 5) 전년도 어선어업 보조사업(국비 및 도비 사업 모두 포함) 사업자 선정된 후 포기한 자(단, 사업시행 전 신청장비에 대해서 전액자담으로 설치하여 사업을 포기한 자, 해양사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한 자는 제외한다.)
- 6) 외국과의 어업협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적용시점 및 기간 : 2020. 2. 14. 18:00 이후 위반행위자의 처분일로부터 3년간

#### 5.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차수별 보조금 심의일 12일 전 신청·접수건 단위로 심의 진행 (이후 신청 건 다음 차수 심의)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1】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1. 보조사업명 : 2025년도 어망(자망) 조립 장비 구입 지원
- 2. 보조사업 신청자
  - O 성 명:
  - O 주 소:
  - O 연락처 :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0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기타

- 5. 보조사업 기간 :
-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_			비연 (법인)등	려단체 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玛
대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丑	주 소			연락	사무실	
사				처	핸드폰	
사 업 명		2025년도 어망(자망)조립 장비 구입 지원				
사업내용		어망(자망)조립 장비 구입 지원				
사약	 날기간		2025.	1월 ~	12월	
사 업 비			천원			천원( %)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2년				2024년
		-		-		1
첨부서.	류					*
	(법 소 대 표 자 사 사 (사 동안 2년간 등	대 성명 표 주소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기간 사업비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법인명)  소재지  대성명  표자 주소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사업계획서, 견적서, 어구	(법인명)       소재지       대성명       조소자       사업명     2025년도 어망(자 어망(자망)조       사업내용     어망(자망)조       사업기간     2025.       사업비     천원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2년       처보서류     사업계획서, 견적서, 어구 생산·판매역	(법인명)	(법인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원 수  대 성명 주민등록번호(선택 표 주소 연합 사무실 처 핸드폰  사업명 2025년도 어망(자망)조립 장비 구입 지 사업내용 어망(자망)조립 장비 구입 지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사업비 전원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인) 신청인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u>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u>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u>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u>
   보관·이용기간: <u>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u>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u>동의합니다. □(체크)</u>
-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 사 업 계 획 서

	사업가	요
--	-----	---

- O 사 업 명 :
- O 사업기간:
- O 사업내용 :
- O 대상어선

선 명	총톤수	어선번호	업 종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고

0

0

## □ 사업비 집행계획

##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작성요령>

-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 ③ 금 액: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 ④ 산출내역(기초):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천원
  -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